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67
----------	-----------

제출연월일	2012. 9. 1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유용미생물배양센터를 설치하여 유용미생물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친환경농·축산물 생산 및 환경정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관리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정함(안 제1조 ~ 제2조)
- 나. 유용미생물배양센터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 제6조)
- 다.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일시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 제8조)
- 라. 유용미생물 공급제한 및 공급장려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 ~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300백만원(2013도 예산 확보예정)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2. 7. 26. ~ 8. 15.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붙임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배양센터는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연구·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배양센터는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② 군수는 배양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을 지원하여 운영한다.

제6조(생산 및 수급계획)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군민 이외의 자로부터 공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

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유용미생물의 공급은 신청 즉시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일시) 유용미생물은 매주 2회(09시부터 15시까지) 공급한다. 다만, 배양기기 운영점검 기간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공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3. 제11조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10조(공급장려) ①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농가
3.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유용미생물을 무상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급가격) 공급가격은 거창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군수가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2조(판매금액 입금) 유용미생물 판매금액은 당일 군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날 입금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배양센터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 ② 군수는 배양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을 지원하여 운영한다.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배양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지원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00년)	3차년도 (00년)	4차년도 (00년)	5차년도 (00년)	합계
총 비용(a - b)		300,000					300,000
세출	순수배양기	300,000					300,000
	소계(a)	300,000					300,000
세입	-	-					-
	소계(b)	-					-

3. 관련의견 : 축산용 생산을 위한 배양장비 확충이 요구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구 분	규격 및 단위	단가(천원)	수량	사업비(천원)
순수멸균 미생물배양기	1,200 ℓ / 식	100,000	3기	300,000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